

택시물류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지원팀장	김광형	3707-8345
담당자	유현식	3707-8279

사업목적

- 택시카드 이용을 활성화시켜 이용시민 편의 증진과 택시 이용수요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2014년
- 사업규모 : 70,422대 (전체 택시의 97.4%)
- 사업내용
 - 스마트카드사에서 법인/개인사업자 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카드결제기 설치·운영
 - 카드결제(선·후불교통카드,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결제, 영수증 발급
- 지원기준 : 관리비 월 10천원(대당), 통신비 월 5천원(법인택시에 한함)
- 사업비 : 7,400백만원

사업필요성

- 택시 이용요금을 교통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새로운 택시 이용수요 창출을 통한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와 침체된 택시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3조

○ '11년 추진실적(10월)

- 카드택시 장착대수 : '07.12월 23,682대 ⇨ '11.10월 70,422대 (전체의 97.4%)
- 카드결제율 : '07.12월 3.5% ⇨ '10.12월 38.9% ⇨ '11.10월 45.3%

○ 추진계획

- 사업주체 : 법인·개인 택시사업자
- 사업절차 : 카드결제(택시사업자) → 결제자료 수합 → 심사 → 지원(택시사업자)
- 예산지원
 - ▶ 관리비(1대당) : 월 10,000원(법인+개인택시, 카드결제율에 따라 차등지원)
 - 월 50건 미만 지원금 없음, 월 50건 이상(6,000원) ~ 250건 이상(10,000원)
 - ▶ 통신비(1대당) : 월 5,000원(법인택시만 해당)
 - 카드결제율 제고 : '11년 45% → '14년 6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경상보조	7,400	8,553	△1,153	◦ 운영비 7,400백만원 - 관리비 : 6,028,940천원 - 통신비 : 1,371,060원

※ 증감사유

- '10년 투자심사시 카드결제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매년 20% 감액조치토록 함에 따라 감편성
- '12년도에는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비 미지원, 관리비 산정시 월 50건 이상 결제율이 86.86%('11년 0.8%)로 조정 산출되어 '11년도 예산보다 감소됨

기대효과

-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 및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이용승객 편의 제공

택시 콜서비스 지원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지원팀장	김광형	3707-8345
담당자	정영훈	3707-8280

□ 사업목적

- 택시영업을 ‘배회영업’에서 ‘콜처리 방식 영업’으로 택시 이용문화를 개선하고, 신속한 콜서비스로 고객 만족형 택시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4
- 브랜드콜택시 : 24,310대(전체택시의 34%)
- 사업수행주체 : 5개 브랜드콜사 (나비콜, 엔콜, 에스택시, 하이콜, 케이택시)
- 사업내용 : GPS 지정배차, 카드결제, 업무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등 제공

□ 사업필요성

- 브랜드콜택시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콜 운영비 등을 예산 지원하여 운전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나가고는 있으나,
- 보조금 지급 중단 시 가입차량 탈퇴 등으로 사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업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까지 보조금 지급 필요

□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 (재정지원)
 -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153호 (‘11.8.1)

○ 추진실적 ('07년 대비)

- 월 콜처리 실적 : 138,000콜 → 568,516콜 (312% 증)
- 1대당 하루 콜처리 실적 : 0.29콜 → 1.01콜 (248% 증)
- 콜탐승률 : 57.9% → 78.8% (20.9%포인트 증)
- 안심서비스 등록자 : 6,580명 → 168,477명 (2,460% 증)
- 업무택시 이용업체 : 32개 → 4,449개 (13,803% 증)

□ 사업추진계획

○ 콜운영비 보조금 지급 : 콜실적에 따른 차등지급

- 월 30콜 미만 미지급, 30콜 ~ 40콜 2만원에서 3만원 차등지원

○ 자격미달인 브랜드콜사 브랜드 지정 취소 및 콜수행능력이 검증된 사콜의 브랜드콜택시 추가 지정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5,110	13,221	△8,1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	15	-	
사무관리비	-	110	△110	◦ 홍보물 제작 11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5,095	13,096	△8,001	◦ 콜단말기 지원 500백만원 ◦ 콜운영비 지원 3,995백만원 ◦ 브랜드별 운영평가 인센티브 600백만원

※ 증감사유

- '10년 투자심사 당시 보조금 지급을 '14년까지 연장하되, 매년 20%이상 삭감하기로 하여 감편성
- '11년 5월 콜운영비 지급기준이 실적에 의한 차등지급으로 바뀌어, 콜운영비가 과거의 18% 수준만 지급되고 있음
- '12년도에는 시계외항증요금이 부활되는 것을 고려하여 '12년도 예산 요구액에 심야 인센티브 사업비 미반영

□ 기대효과

○ 콜서비스 활성화로 대시민 택시서비스 품질 향상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정책팀장	전명수	3707-9761
택시관리팀장	이광환	6321-4338
담당자	박지향	6321-4244
	김해진	6321-4251

□ 사업목적

-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를 통해 택시업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산업의 체질 개선과 대시민 택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택시서비스 다양화와 차별화 추진으로 택시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①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평가대상 : 서울의 법인택시 255개 업체 및 개인택시 18개 지부
- 평가분야 : 고객만족도 평가, 모니터링 평가, 서비스기반 평가

② 택시서비스 다양화

- 사업내용 : 택시서비스 다양화와 차별화 추진(심야전용택시, 예약 택시제 도입)
 - 심야(20:00~04:00) 전용택시 시범운영 : 희망자 모집·운영(개인택시)
 - 예약택시제 시범운영 : 리무진 택시 등 사전예약에 의해서만 운행하는 택시

□ 사업필요성

-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서비스 평가 지속 필요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증액 필요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①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 사업진행절차 : 평가계획수립 ⇨ 전문평가기관 선정 ⇨ 평가실시(연중) ⇨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급, 부실업체 특별교육 실시 등
-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 택시에서 하차하는 승객에게 설문지 배포하여 조사
 - 모니터링 : 전문 모니터요원이 승객을 가장하여 택시에 탑승 조사
 - 서비스 기반평가 : 준법경영, 근로자복지, 시책사업 참여 여부 등 반영 평가
- 평가 후 조치 :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보조금(운전자 처우개선용)을 지급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등 실시
- 예산지원형태 : 우수업체에 직접 지급(시)

② **택시 유형 · 서비스 다양화**

- 심야전용택시 시범 운영 : 운행시간 20:00 ~ 04:00
 - 개인택시 면허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120대 시범운행 후 확대 검토
- 예약 택시제(리무진 전세예약택시, 사전예약택시) 시범 운영
 - 고급형 택시 희망자 중 30대 시범 운행 후 확대 검토
 - 회사 또는 개인과 계약, 전화 호출과 예약에 의해서만 운행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880	1,000	880	
사무관리비	20	-	20	◦ 인증마크 제작 20백만원
연구용역비	300	300	-	◦ 택시서비스 품질평가 300백만원
기타보상금	1,500	700	800	◦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1,5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60	-	60	◦ 심야전용 및 예약 택시 운영 60백만원

※ 증감사유

-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서비스개선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보상금 8억원 증액
- 택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심야.예약택시 도색비 6천만원 신규 편성

기대효과

- 택시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지원팀장	김광인	3707-8345
화물물류팀장	이영표	3707-9762
담당자	이김정석	3707-8347
	김영	3707-9759

□ 사업목적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함으로써 요금인상 요인과 물가 및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1. 7. 1 ~ '12. 6. 30
- 지원대상 : 택시 72,299대, 화물 55,000대
-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산출

택시 : 221.36원/ℓ = 우리시(지방세) 석유판매부과금 197.97원/ℓ + 국세청(국세) 23.39원/ℓ (유류세)

화물 : 경유 334.97원/ℓ : 유류세(현재) - 유류세('01.6) - BD공제액 (528.75원 - 183.21원 - 10.575원)
LPG 197.97원/ℓ : 유류세(현재) - 유류세('01.6) (221.36원 - 23.39원)

○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택시	유가보조금	137,444	163,917	83,377	32,454	32,008	165,000(예상)
	거래건수	197,284	196,420	490,192	589,231	589,086	620,000(예상)
화물	유가보조금	81,195	110,561	107,600	111,373	127,189	133,000(예상)
	거래건수	1,699,416	2,358,821	2,824,139	4,489,887	5,630,222	6,000,000(예상)

사업필요성

-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및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2012. 6. 30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상분 만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재정지원)
 -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 사업수행주체 : 운수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시·도지사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27,785	298,030	△70,24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	30	-	○ 일시사역인부 2명
운수업계보조금	227,755	298,000	△70,245	○ 택시 121,024백만원 ○ 화물 106,731백만원

※ 2011년 유가보조금 재원인 국토해양부의 우리시 택시, 화물 주행세 안분액이 2,450억원임을 감안하여 2012년 세출예산으로 안분액 대비 93%인 2,277억원을 예산편성함

기대효과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운송업계의 부담증가 완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개선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관리팀장	이광환	6321-4338
담당자	국응생	3707-9752

□ 사업목적

- 친절을 생활화하고 직업의식을 갖춘 우수 운수종사자 양성
- 교통문화교육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 사업개요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
 - 규모 : 대지 1,650.1㎡, 건물 5,222.67㎡(지상5층, 지하1층)
 - 소재지 : 관악구 남현동 1063-6
 - 사업내용 : 복지사업(사우나, 헬스), 교양사업(에어로빅, 요가, 발리댄스), 교육사업
 - 수탁자 : (사)전택노련복지협회, 근무인원 21명
 - 위탁기간 : 2010. 9. 1 ~ 2013. 8.31
 - 위탁내용
 - 운수종사자 교육사업(개인택시 정기교육, 보충교육)
 - 운수종사자 복지·교양사업 및 교육원 시설물 등 유지관리·운영
- 운수종사자 교육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대상 : 67,800명 (개인·법인택시(택시신규 10,800명 포함), 화물)
 - 교육기관 : 3개 기관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새마을연수원)
 - 교통문화교육원 : 개인택시 정기·보충교육 / 화물 정기교육 각 4시간
 - ※ '12년도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기관을 새마을연수원에서 교통문화교육으로 변경
 - 교통연수원 : 법인택시 정기·보충교육 각 4시간 / 화물정기교육 4시간 / 법인택시 신규교육 16시간 (교육비 지원 없음)
 - 새마을연수원 : 개인택시 신규교육 16시간 (교육비 지원 없음)

사업 필요성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업의식을 갖춘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필요
- 또한, 운수종사자는 1000만 시민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안전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
 - 목욕탕 닥트공사, 가열탱크 교체 등 내부공사 : '12. 상반기
 - 사우나출입자동화시스템설치 : '12. 상반기
 - 운수종사자 교육사업(개인택시 정기·보충교육) : 연중
- 운수종사자 교육보조금 지원
 - 교육비 지원기준 : 1인당 8,000원
 - 교육인원 : 67,800명(개인·법인택시 36,800명, 화물 31,000명)
 - ※ 택시 36,800명 중 개인·법인택시 신규자(개인2,000명, 법인 8,800명) 교육비는 예산지원 없이 교육대상자 부담
 - 교육기관 및 교육구분
 - 교통연수원 : 법인택시 정기교육, 신규자 교육, 보충교육, 화물교육
 - 교통문화교육원 : 개인택시 정기교육, 신규자 교육, 보충교육, 화물교육
 - ※ '12년도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기관을 새마을연수원에서 교통문화교육원으로 변경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453	1,449	4	
민간경상보조	456	608	△152	○ 운수종사자 교육 456백만원
민간위탁금	997	841	156	○ 교통문화교육원 운영비 997백만원

※ 2000년 12월 준공된 교통문화교육원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위해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기대효과

- 안전운행과 친절의식 등 자질함양으로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자동차관리팀장	유재욱	3707-9763
담당자	박경여	3707-9766

□ 사업목적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예방점검을 통해 시스템 장애발생 최소화와 기능개선
- 자동차 영치정보, 압류정보 제공 등 대시민 서비스 확대
-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기능개선, 확대개발로 업무효율성 증진, 시민서비스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사업내용
 -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및 자동차 정보연계 상용S/W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위한 유지보수
 - 연계서버 운영을 위한 상용S/W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영치업무 통합관리 및 지원시스템 개발, 현장단속 프로그램 개발
 - 자동차 압류해제 자동화와 특별사법경찰업무(자동차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자동차 압류해제 실시간 자동처리 및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 정보이용승인시스템 구축
 - 특별사법경찰업무의 업무처리 표준화와 통합 전산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무단방지, 무등록자동차(정비업))
 - 자동차 영치정보, 압류정보 등 대시민 서비스 제공
 - 번호판 영치정보, 압류제도, 압류정보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모바일), 문자안내 등
 -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를 위한 서버, 상용S/W 구매 및 설치

사업필요성

- '11년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0만원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어 세수입증대와 대포차운행 근절을 통한 시민피해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돈을 내고도 자동차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불편한 시민과 표준화 및 통합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 등 자동차관련 업무의 자동화와 통합시스템 구축필요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11. 4. 25 :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단속시스템 구축계획
 - '11. 6. 14 : 2012년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 '11. 7. 26 : 자동차 압류해제 자동처리 및 정보이용 승인시스템 구축계획
 - '11.11~12 : 제안요청서 검토, 계약심사 요청
 - '12. 1~12 : 사업발주 및 계약, 사업시행 및 준공(예정)
- 사전절차이행여부 : 정보화타당성심사 승인('11.9.9)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046	25	1,021	
사무관리비	2	-	2	○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소모품비
공공운영비	52	25	27	○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7백만원 ○ 불법자동차단속 통신비 5백만원
전산개발비	507	-	507	○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불법자동차 단속(영치)시스템, 자동차 압류업무자동화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5	-	485	○ 하드웨어 232백만원, 상용SW 253백만원

※ 자동차 번호판 영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동차 압류해제 및 특사경시스템 구축,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을 통합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함.

기대효과

-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법 개정 등 변화하는 교통업무 환경을 반영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활성화로 대포차 근절, 시민안전 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준향상(신규)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정책팀장	전명수	3707-9761
택시지원팀장	전김광형	3707-8345
담당자	이정태	6321-4337
	정영훈	6321-8280

사업목적

-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 복지센터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 제공과 운전자 복지 증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4
- 사업내용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확대정착을 위한 검증위원회,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시제도 운영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성과급형 부분 월급제 단계별 시행
 - 복지센터 개선 : 시설 개보수, 노후한 비품 교체 등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서울시운수종사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153호('11. 8. 1)

○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 1단계('11. 7~'12. 6)
 - 수입금 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노·사·민·관 상생협약(MOU) 체결, 택시업체 경영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
- 2단계('12. 7~'13. 7)
 -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제 도입('12년) 택시 운수종사자 급여수준을 버스의 70% 수준으로 인상 유도
- 3단계('13. 7~)
 - 수입금 전액관리제 완전 이행으로 성과급제 정착

○ 복지쉼터 운영 개선

- 신규 수탁자 선정 : 2012. 8. 2 이전
- 선정방법 : 경쟁입찰(현 수탁자의 경영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만 재계약)
- 크릭발생으로 안전에 위험을 주는 복지쉼터 복측 담장 철거 및 시설 개·보수
- 복지쉼터 서측 담장 철거하여 정원을 활용 부족한 주차장 확보
- 노후한 운영비품 교체 및 추가비품 구입 : 개설 당시 시에서 지급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449	0	449	
사무관리비	394	-	3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위원회 운영 279백만원 ◦ 경영정보 공시제도 운영 113백만원 ◦ 복지쉼터 평가위원회 운영 2백만원
민간위탁금	55	-	55	◦ 복지쉼터 시설비 55백만원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2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신규 편성

기대효과

-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대시민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 운영(신규)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정책팀장	전명수	3707-9761
담당자	이태경	6321-4337

사업목적

- 택시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통한 새로운 택시서비스 개선 기반확보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고급서비스 신경영 모델 제시 · 확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14
- 규모 : 1개 업체, 100~200대 규모로 운영
- 사업내용
 - 택시산업 투명성 제고와 새로운 택시운영 모델 개발 연구
 - 기존 차고지, 시유지, 개발예정지 등을 후보지로 친환경적 권역별 차고지 개발
 -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 총사업비 : 4,025백만원

사업필요성

- 현재 운영중인 택시회사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낙후된 경영방식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우므로
- 성과급형 월급제를 시행하는 공공형 택시회사의 설립, 운영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기반확보와 새로운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 공공형 택시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 후 시범 실시를 위한 차고지 시설 지원 등이 필요함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추진계획
 - 공공형 택시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 기존업체 공모·지정, 신규업체 공모·위탁, 민관합자 등 운영형태 검토
 - ▶ 운영비용에 대한 표준원가분석, 수익성분석, 재정지원 규모, 차고지 선정 등
 -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운영
 - ▶ 규모 : 1개업체 100~200대 규모로 시범실시 ※ 전기택시 도입
 - ▶ 방식 : 연구결과에 따라 최적대안 선정 추진하되, 차고지 확보 지원
 - ▶ 운영 :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성과급형 월급제, 경영공개 등 공공성 강화, 준공영
 - ※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시, 전문가, 시민대표, 업체·조합·노조 대표 등)
 - 차고지 건설 지원
 - ▶ 세차, 정비, 주차타워, 사무실, 배차대기실 등 입체적 설비 구축
 - 참여 법인업체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계약제 도입 등
 - ▶ 서비스 수준·내용에 대한 계약 설정, 정기적인 평가 실시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010	0	1,010	
사무관리비	10	0	10	◦ 사업설명회, 운영협의회 운영 10백만원
시설비	1,000	0	1,000	◦ 차고지 시설설치 1,000백만원

※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운영을 위해 '12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신규 편성

사업효과

- 택시업체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 구조 분석 체계 확보
-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택시 서비스 모델 제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신규)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면허팀장	오세광	3707-9757
담당자	백종이	3707-9768

사업목적

- 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과도한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3 (2년간)
 - 의무 장착 시기 : 법인택시 '12.12.31, 개인택시·화물 '13.12.31까지
- 사업규모 : 총 72,299대
 - 2012년 대상 : 30,828대(전체 법인택시 22,828대 + 개인택시 대폐차 8,000대)
 - 2013년 대상 : 41,471대(개인택시)
- 총사업비 : 10,845백만원(국비 포함)

사업의 필요성

- '09.12.29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의무장착 시기가 정해진 사업이므로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 택시사업자들의 자금 부담 경감과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장착의무), 제9조(재정지원)
- 추진계획 : 설치비용의 50% 지원(국비 포함)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감	산출내역
민간경상보조	2,300		2,300	○ 30,828대×300,000원(평균가격)×24.8%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을 위해 '12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신규 편성

기대효과

- 영업용 택시의 과속, 급가·감속, 끼어들기 등 사고예방 가능

택시요금체계 다양화 등 요금제도개선(신규)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정책팀장	전명수	3707-9761
담당자	박지향	6321-4244

□ 사업목적

- 택시운송조합(개인·법인)의 택시요금 인상 건의에 대한 운송원가 검증 실시
- 기존 택시 유형(중형, 대형, 모범형)외에 서비스별, 운영형태(개인/법인)별 다양한 요금체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조
- 사업기간 : 2012.1 ~ 12월
- 사업내용
 - 택시조합의 요금조정 건의에 대한 검증
 - 운송원가계산 적합 여부, 표준운송원가 타당성 여부 등
 - 중형·모범택시 운송원가 산정,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용 등을 반영하여 요금 조정안 제시
 - 택시 유형별 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실시
 - 서비스별 : 기존(중형, 대형·모범) ⇒ 기존 포함, 소형, 중형, 고급형
 - 운영형태별 : 개인/법인 별도체계, 카드/현금 차등화 등
 - 인상요금조정 모델 적용을 통한 요금조정 정례화 방안 검토

□ 사업 필요성

- '10.11.30 택시운송조합(개인·법인)으로부터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상승과 운송여건 변화로 인한 택시요금의 요율변경 건의가 있었고,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택시운송원가에 대한 검증 필요
- 택시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해 다양한 요금체계 마련 필요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진행절차 : 택시운송원가 검증과 요금제도 개선 계획 수립('12. 1월) →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택시운송원가 검증과 요금제도개선을 위한 분석 의뢰 → 택시요금 개선안 마련 → 시의회건의청취 →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택시요금 유형별 요율 결정 → 요금변경 신고 → 요금변경신고 수리 → 미터기 수리 검정
- 추진계획
 - '12. 상반기 : 택시 운송원가 검증 및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 '12. 하반기 : 대안검토,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필요시 요금조정 시범시행
- 사전절차 : 학술용역심의 비대상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100	-	100	◦ 요금제도 개선 원가분석 100백만원

※ 택시요금체계 다양화 등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12년 예산액 신규편성

기대효과

-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자율성보장과 경쟁원리 도입으로 이용 시민 편의 제공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신규)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	김명용	3707-9750
택시정책팀장	전명수	3707-9761
택시관리팀장	이광환	6321-4338
담당자	김해진	6321-4251
	이태경	6321-4337
	윤종현	6321-4253

사업목적

- 영세한 규모,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택시업체를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과 택시전담 기구 설치 타당성 등 검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 1 ~ 11. 30 (10개월)
- 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수의계약)
- 과업내용
 - 택시산업 경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택시타워 시범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 택시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택시업체의 새로운 경영모델 개발
 - 택시업무 효율적·체계적 통합운영방안 마련(택시전담기구 설치 타당성 검토)

사업필요성

- 택시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 필요
 - 유류비 인상, 이용승객 감소, 운전자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한 택시서비스 질적 저하 등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택시산업 체계와 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및 택시시장 활성화 도모
 - 자가용, 대리운전, 대중교통 개선 등으로 위축된 택시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53호, 2011.8.1)
- 과업기간 : '12. 2~11월(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수의계약)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과업내용
 - 택시산업 경영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 운송원가, 경영수지 등
 - 택시산업 경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 택시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영모델 개발 : 공공형 택시
 - 복지센터 및 쉼터 조성, 복지기금 조성 등 운수종사자 복지증진방안 도출
 - 택시업무 효율적·체계적 통합운영방안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
- 추진일정
 - '12. 1월 : 학술용역 발주준비
 - '12. 2~11월 : 학술용역 수행
 - '12.12월 :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학술용역심의 통과 “적정” ('11.11.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연구용역비	300	0	300	◦ 인 건 비 249,485천원 ◦ 경 비 45,502천원 ◦ 일반관리비 4,934천원 (인건비×1.7%)

※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12년 예산액 신규 편성

기대효과

- 택시산업 체계개선과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확보 및 택시시장 활성화 도모에 기여

택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Smart Taxi Network) 구축(신규)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정책팀장	전명수	3707-9761
담당자	박경여	3707-9766

□ 사업목적

- 택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효율적 택시관리 모델 제시
- 택시운행상황, 경영실태, 서비스 현황 등 택시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연구
- 택시운행정보 수집 및 관리 시범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사업내용
 - 택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시스템 통합방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택시운행, 경영, 서비스정보 수집 시범사업 구축(TMS)

〈시범사업 내용(택시전액관리 지원시스템 및 택시업체 제공용 시스템)〉

- 택시업체 및 택시관련 기본정보관리
- 타코정보를 활용한 운행관리(요금, 위치, 운행정보 등)
- 택시전액관리를 위한 통계 및 분석기능 구현
- 택시업체 제공용 운행정보 실시간 조회 및 운영기능 구현
-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를 위한 서버, 상용S/W 구매 및 설치

- 수집·관리하는 택시정보를 활용한 대시민 서비스 모델제시

□ 사업필요성

- 택시종합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 택시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시범사업 우선시행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업위험과 예산절감
- 택시정보를 활용한 대시민 서비스 모델발굴로 택시타기 좋은 서울구현의 기반마련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제59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 서울택시개혁종합대책(시장방침 제153호; '11.8.1.)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11. 7. 27 : 택시정보종합관리시스템(Smart Taxi Network) 구축계획
- '11.11~12 : 제안요청서 검토, 계약심사 요청
- '12. 1~12 : 사업발주 및 계약, 사업시행 및 준공

○ 사전절차이행여부 : 정보화타당성심사 승인('11.9.9)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873	0	873	
연구용역비	410	0	410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410백만원
전산개발비	253	0	253	◦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5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	0	210	◦ 하드웨어 141백만원, 상용SW 69백만원

※ 택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2년 예산액 신규편성

기대효과

- 택시운행, 경영, 서비스 정보의 통합관리와 관리정보를 활용한 택시수요, 안전관리, 대시민 서비스 모델 제시로 택시산업의 획기적 발전 기반마련

택시이용문화 개선(신규)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 명 용	3707-9750
택시관리팀장	이 광 환	6321-4251
담당자	김 해 진	6321-4251

사업목적

-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택시문화조성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택시 실현
- 택시종사자들에게 직업인으로써의 자긍심 고취로 청결하고 친절한 서울택시 구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사업내용
 - 방법택시 운영 및 방법택시 발대식, 방법택시 스티커 제작
 - 함께하는 택시문화(이미지) 조성, 홍보
 - 심야시간 택시승차거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택시이용문화 개선단 시민활동 전개

사업필요성

- 심야시간 대중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시민들의 유일한 귀가 수단인 택시는 주로 만취한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며 승객들의 폭행·폭언에 시달리며 직업 비하적인 발언을 감당하고 있으나, 직업인으로써의 자긍심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임
- 택시를 직업으로 종사하는 10만 명의 택시인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사업으로 택시의 날 제정 및 축하행사, 함께하는 택시문화(이미지)조성 사업, 건전한 택시이용에티켓 홍보물 제작 보급, 캠페인사업 등은 택시종사자와 시민들의 택시이용문화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추진계획

- 택시이용문화 홍보물 제작,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상습 승차거부지역(강남대로, 홍대입구 등) 택시승차거부 현장점검 실시
- 택시 이용문화 조성 개선단 운영
 - 개인택시 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활용
- 방법택시(5,000대) 운영 등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01		201	
사무관리비	92	0	92	◦ 캠페인 엠블럼 등 행사물품 구입 70백만원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 840천원 ◦ 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 21백만원
행사운영비	60		60	◦ 방법택시 발대식, 캠페인 행사비용 60백만원
국내여비	1		1	◦ 심야 택시승차거부 단속 1,2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48		48	◦ 개선단 시민활동비 48백만원

※ 택시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12년 예산액 신규 편성

기대효과

- 시민과 택시운전자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택시이용문화 조성
- 택시이용문화 캠페인 추진으로 서울택시의 이미지 쇄신
- 택시 이용자와 택시종사자간의 신뢰와 배려문화 형성

○ 추진계획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매 분기별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조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0,000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기 타 보상금	100	200	△100	◦ 택시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백만원×100건 = 100,000천원

※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평균 100건)에 따라 사업비 예산편성으로 감액됨

기대효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불법행위 조기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직책	성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3707-9750
택시면허팀장	오세광	3707-9757
담당자	백종이	3707-9768

□ 사업목적

- 외국인 이용객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고, 부당요금·불친절·과속난폭운전을 방지하여 택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5. 1 ~ 계속
- 사업규모 : 외국인관광택시 397대 (서비스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 운영기반 : 콜센터(24시간), 공항안내데스크(인천, 김포), 홈페이지 등
- 요금체계 : 구간요금(공항↔호텔), 대절요금(관광, 쇼핑), 미터요금(20% 할증)
- 현황 및 실태
 - 이용대수 : 397대
 - 일평균 이용건수

구분	'09.5월	'09.12월	'10.6월	'10.12월	'11.9월
일평균 이용건수	143건	158건	219건	230건	259건

- '11년도 고객만족도 자체조사 결과 : 만족이상 99%, 고객 재이용율 39%

□ 사업의 필요성

- 국격을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이용객 언어불편 해소, 부당요금, 불친절, 과속난폭운전 등을 방지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가 필요하고,
-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운전기사 지원 및 콜센터 운영비 지원, 안내데스크 운영, 홍보 및 제휴사업비 지원이 필요함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수행주체 :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위탁 관리
- 사업진행절차
 -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모집, 선발, 교육, 자격증 발급, 제복 등 제작 지급, 차량외장
 - 외국인관광택시 전용콜센터 및 공항(인천, 김포) 안내데스크 운영 및 관리
- 예산지원형태 및 수준
 - 지원대상 : 운송사업자 및 보조금사업자(사업수행 주체)
 - 운송사업자 : 택시외장 도색비, 운전자 제복, 교육비, 콜단말기, 가입비, 월회비
 - 보조금사업자 : 콜센터 운영비(콜센터 상담 인력비, 공항안내데스크 설치·운영비 등)
 - ※ 콜센터시스템 구축비 및 관리 인력비는 보조금사업자가 부담
- 추진계획
 - 운행대수 확대 : 397대('11.10) → 500대('11.12) → 700대('12.12) → 1,000대('14.12)
 - 대당 콜 처리건수 확대 : 0.4건/일 → 1.0건/일('11.12) → 2.0건/일('12.12)
 - 홍보/마케팅 강화로 수요 확대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경상보조	1,556	1,604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기사 지원 481백만원 ◦ 콜센터 운영 717백만원 ◦ 안내데스크운영 221백만원 ◦ 마케팅/광고 등 홍보 137백만원

※ 외국인 관광택시 신규 증차 감소 및 증차감소로 인한 차량도색비용 등 절감으로 예산 감액편성됨

기대효과

- 새로운 선진 택시문화 선도 및 이미지 제고로 관광서울 경쟁력 제고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신규)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택시물류과장	김 명 용	3707-9750
택시지원팀장	김 광 형	3707-8345
담 당 자	유 현 식	3707-8279

사업목적

- 택시 소액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 택시카드 이용활성화와 이용 시민 편의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2013년 (2년간)
- 사업대상 : 소액결제(5,000원 이하) 대상 전 차량(법인, 개인)
- 카드 수수료 : 신용카드 2.1%, 교통(현금)카드 1.95%
- 소액결제 현황

(KSCC 자료제공)

택시요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결제건수	36백만건	41백만건	45백만건	47백만건
카드수수료 징수금액	28억원	32억원	35억원	37억원

※ 택시카드 소액결제는 매년 결제건수와 수수료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사업 필요성

- 카드결제 활성화 및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택시사업자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5,000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사업추진경위

- 제23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상정
 - 발의의원 : 이종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외 10명
 - 발의일자 : '11. 8. 17
-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153호('11. 8. 1)

○ 추진계획

- '12. 1월~3월 : 조례, 규칙 제정 및 교통사업자(KSCC)와 운영관리 협정체결
- '12. 4월~ :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경상보조	3,500	-	3,500	◦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택시카드 결제건수 및 수수료 징수금액 추이 반영 - '12년 결제건수 : 45백만건 - 카드수수료 징수금액 : 35억원

※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신규 예산 편성

사업효과

- 택시운송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택시 이용자 편의 제공 기여